

---

#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

2026. 2.



**금융감독원**

<b>I. 2026년 금융감독 방향</b>	<b>1</b>
1. 금융감독 환경	1
2. 금융감독 방향	3
<b>II.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b>	<b>4</b>
<b>전략① [쇄신]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 지속</b>	<b>7</b>
1. 감독행정의 투명성·공공성 강화 및 금융회사 역량 강화 지원	7
2. 금융감독 디지털화,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한 감독 경쟁력 강화	8
<b>전략② [신뢰]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b>	<b>9</b>
3.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 확립	9
4. 민원·분쟁처리 혁신 등을 통한 사후적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	11
5. 소비자 권익을 훼손하는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엄단기조 유지	12
6. 취약 분야 및 내부통제 점검 등을 통한 책임경영 유도	13
<b>전략③ [안정]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b>	<b>14</b>
7.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선제적 대응	14
8. 가계·기업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 관리	15
9. 생산적 금융과 리스크관리의 균형 下 감독제도의 합리적 개선	16
<b>전략④ [상생] 국민과 금융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b>	<b>17</b>
10.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자금공급 원활화 및 투자자보호	17
11.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따뜻한 금융” 실현	18
12. 민생금융범죄 척결역량 강화 등을 통한 “잔인한 금융” 혁파	19
<b>전략⑤ [미래] 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b>	<b>20</b>
13.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구축	20
14.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 가상자산 거래환경 조성	21
15.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 지원	22

# I. 2026년 금융감독 방향

## 1 금융감독 환경

### 가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전환 요구

- '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제도적 체계는 구축되었으나,
  - 홍콩 H지수 ELS, 해외부동산 펀드 등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반복되는 등 일부에서 단기성과 중심 불건전한 경영관행,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해 소비자중심의 실질적인 운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
    - \* 소비자피해는 '판매뿐 아니라, 상품의 '설계·제조 과정에서의 문제도 중요한 원인이나 인식 부족
  - 디지털 전환\*, 금융상품의 복잡·다양화 등 금융혁신 지속 등은 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섬세하고 촘촘한 보호체계를 갖출 필요성을 제기
    - \* 온라인 판매시 판매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상품의 핵심위험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 소비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온라인 다크패턴 위험 가능성 등 증가
  -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 확산에 따라 금감원 소비자보호 업무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도 대내외적으로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
    - \* 소비자보호 감독의 중심을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적 보호'로 전환·확장 등

☞ 소비자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상품설계·제조 단계부터 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보는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

### 나 민생금융범죄 지능화·조직화 등에 따른 피해 증대

- 민생금융범죄(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의 지능화·조직화\* 등으로 인신구속·성착취 추심, 보이스피싱 범죄 국제화 등 반사회적·초국경적 행태 확산\*\*
  - \*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 초국경범죄, 온라인 불법광고, SNS 활용 보험사기 등
  - \*\* 「불사금 피해신고센터」 피해상담신고건 : ('22)10,913→('23)13,751→('24)15,397→('25) 17,538
- 제도권 금융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민생금융범죄 특성상 취약계층의 생존 문제와도 직결
- 프랜차이즈 등의 약탈적 대출, 비금융채권인 렌탈채권 추심 등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도 증대

☞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피해예방·피해구제-적발·단속 및 처벌' 3 단계에 걸쳐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

## 다 자본시장을 위협하는 불공정거래·불건전행위 지속

- 기업실적 개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노력과 함께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25.7월) 출범을 통한 불공정거래 척결 노력\*\* 등으로 코스피 최초로 5,000p 돌파(26.1.27.)

\*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독립이사 선임의무 강화, 전자주총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 슈퍼리치들의 대규모 장기 시세조종, 공개매수 담당 증권사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 다만, 일부에서는 경영 투명성과 주주권의 보호 강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여전히 미흡하고, 사모펀드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 신뢰도 저하 문제가 지속되어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

\* '25말 기준 한국 증시(코스피) PBR(추정치)은 1.3으로 '24말(0.8) 대비 큰 폭 상승하였으나, 신흥국 평균(2.1)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계속되고 있어, 금감원의 조사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여 투자자 신뢰를 확보할 필요

## 라 기본적인 IT 운영·보안 통제 미흡 등으로 인한 IT 보안사고 증가

- 금융권의 디지털 의존도가 확대되는 가운데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수법 고도화 등으로 디지털보안 사고(고객정보 유출, 업무 마비 등)가 빈발\*

\* 쿠팡페이(25.12월), 두나무(11월), 롯데카드(8월), SGI서울보증(7월), 마스틴투자운용(4월) 등

- 정보유출에 대한 제재근거 미흡\* 및 사후제재 중심의 감독체계 운영 등으로는 대규모 보안사고 사전 예방에 한계

\* 여전법 및 전금법을 제외한 개별 업권법에는 정보유출 관련 제재근거가 없는 상황 (전금법상으로도 '해킹' 정보유출의 경우 영업정지 범위가 최대 1개월 이내)

☞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감독 패러다임을 이용자 중심의 사전예방 관점으로 전환하고, 위규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

## 마 취약부문 경영여건·금융부담 확대 등 서민경제 어려움 지속

- 고환율 장기화, 내수경기 회복 지연, 원자재·임대료 부담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

\* '25.11월 [소상공인] 체감 BSI<sup>†</sup> : 75.0(전월비 △4.1p), [전통시장] 체감 BSI : 75.8(전월비 △2.7p)

† BSI지수 : 사업체의 주관적 의견을 수치화하여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경기예측지표(중기부·소진공)

- 불합리한 수수료·금리 부담 등으로 취약계층 금융비용도 증가


☞ 금융권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상생·포용금융 제도화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민생 경제 재기를 지원함으로써 "따뜻한 금융"을 실현

## 2 금융감독 방향

□ 금융감독원 5대 중장기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및 금융시장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하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감독 방향 수립

\* ①(쇄신)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쇄신 ②(신뢰)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③(안정) 굳건한 금융시스템, ④(상생) 국민과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⑤(미래) 책임 있는 혁신기반

### 5대 전략목표

	쇄신	신뢰	안정	상생	미래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	감독행정 투명성·공공성 강화 감독경쟁력 강화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	금융소비자보호 최우선	사후적 소비자권의 보호강화	소비자권의 훼손 엄단	금융회사 책임경영 유도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	리스크 선제적 대응	가계·기업 부채 안정적 관리	감독제도 합리적개선		
국민과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자본시장 혁신	따뜻한 금융실현	잔인한 금융 허파		
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디지털, 가상자산 신뢰환경 조성	성장잠재력 확보 지원		

## Ⅱ.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금융감독 방향에 따라 15대 핵심과제, 42개 세부과제를 마련

###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전략목표	15대 핵심과제
<b>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행정의 투명성·공공성 및 금융회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li> <li>• 금융감독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감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li> </ul>
<b>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li> <li>• 민원·분쟁처리 혁신 등을 통해 사후적 소비자권익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li> <li>• 소비자 권익을 훼손하는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해 엄단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li> <li>• 취약 분야 및 내부통제 점검 등을 통해 책임경영을 유도하겠습니다.</li> </ul>
<b>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li> <li>• 가계·기업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li> <li>• 생산적 금융과 리스크관리 간 균형 하에서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li> </ul>
<b>국민과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자금공급을 활성화하고 투자자보호를 추진하겠습니다.</li> <li>•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겠습니다.</li> <li>• 민생금융범죄 척결역량 강화 등을 통해 “잔인한 금융”을 혁파하겠습니다.</li> </ul>
<b>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li> <li>•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li> <li>•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li> </ul>

[2026년 업무계획 - 5대 전략, 15대 핵심과제, 42개 세부과제]

<b>감독 목표</b>	- '26년을 <b>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元年</b> 으로 - - 대내·외 <b>불확실성</b> 에도 흔들림 없는 <b>금융시장 안정성 확보</b> -
------------------	---

<b>5대 전략 목표</b> - <b>15개 핵심 과제</b> - <b>42개 세부 과제</b>	<b>1. [쇄신]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 지속</b>	
	1) 감독행정의 투명성·공공성 강화 및 금융회사 역량 강화 지원	① <b>검사제재 프로세스, 내부 경영혁신</b> 등을 통한 <b>감독행정의 투명성·공공성</b> 제고 -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 제한, 제재심 민간위원 다양화 ② <b>금융회사 업무의 편의성 및 준법의식</b> 제고 지원 - 인허가 통합시스템(paperless) 구축,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확대
	2) 금융감독 디지털화,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한 감독 경쟁력 강화	① <b>AI 기반 금융감독 효율화 등 디지털 업무혁신</b> 추진 -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에 AI 기술 적용 ② <b>대외정보 제공 확대</b> 등 금융감독 수요자의 <b>편익 증진</b> - 금융회사 재무·영업 관련 금융 공공데이터 추가개방
	<b>2. [신뢰]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b>	
	3)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 확립	① <b>‘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b> 로의 소비자보호 <b>패러다임 전면 전환</b> -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 구축 ② <b>소비자 안내 강화</b> 등을 통한 <b>소비자 중심의 금융거래 환경</b> 마련 -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상품 조건변경 차단을 위한 안내 강화 ③ <b>금융후생의 소비자 환원 등 소비자 혜택 적극 강화</b> -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보험금 신속지급을 위한 제도개선
	4) 민원·분쟁처리 혁신 등을 통한 사후적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	① <b>금감원 민원·분쟁처리 프로세스 혁신</b> 지속 -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한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기준 마련 ② <b>금융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 기준 정비</b> - 분쟁조정 기준의 적정성 재검토 및 법규 제·개정사항 반영 ③ <b>금융회사 민원·분쟁처리 역량 강화</b> 및 소비자 권익 증진 도모 - 분쟁민원 특이사항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채널 구축
	5) 소비자 권익을 훼손하는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엄단기조 유지	① <b>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이슈</b> 에 대한 <b>주의환기 및 검사역량 집중</b> -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에 대한 테마검사 ② <b>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및 회계정보의 신뢰도 강화</b> - 기업금융, 신규사업 가장 등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및 신속조사 ③ <b>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 및 엄단</b> - 허위 안내자료 등을 사용한 GA, 설계사 엄중조치 추진
	6) 취약 분야 및 내부통제 점검 등을 통한 책임경영 유도	① <b>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b> 에 대한 <b>집중 점검</b>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규제 실태점검 ② <b>금융회사의 건전한 영업관행 유도</b> 를 위한 선제적 점검·제도개선 등 -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중점 점검 ③ <b>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b> 등 건전한 경영문화 정착 유도 - 「지배구조 개선TF」를 통한 이사회 독립성, CEO선임절차 관련 제도개선 추진
	<b>3. [안정]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b>	
	7)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선제적 대응	① <b>금융시장 상황 급변 및 부실발생</b> 에 대비한 <b>모니터링·조치 강화</b> -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 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유사시 밀착관리 ② <b>금융시장 리스크요인 점검</b> 및 선제적 대응 -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 등 지원 ③ <b>부동산금융 건전성 제고 노력</b> 지속 - 부동산PF 부실감축 지속 추진 및 제도개선을 통한 부실 재발방지

5대 전략 목표 - 15개 핵심 과제 - 42개 세부 과제

<p>8) 가계·기업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 관리</p>	<p>①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노력 지속 - 가계부채 총량목표 준수유도, 상환능력 기반의 여신심사 관행 정착</p> <p>② 기업부채 잠재리스크에 대한 안정적 관리 및 선제적 대응 -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엄정한 운영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 유도</p> <p>③ 기업 구조조정 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구조조정 실효성 제고 -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를 위한 기업 신용위험평가 운영체계 개선</p>
<p>9) 생산적 금융과 리스크관리의 균형 하 감독제도의 합리적 개선</p>	<p>① 글로벌 정합성 준수 하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규제 개선 - 정책프로그램을 통한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시 요구자본 경감</p> <p>② 금융산업별 핵심 리스크요인에 초점을 둔 감독제도 정비 및 선진화 - (은행)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 (보험) 계리가정보고서 도입</p>

#### 4. [상생] 국민과 금융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p>10)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자금공급 원활화 및 투자자보호</p>	<p>① 모험자본 공급 확대 및 생산적 금융 기반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확대에 따른 관리·감독체계 마련</p> <p>② 매력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 외국인 투자제도 보안을 통한 MSCI 선진국지수 편입기반 마련</p> <p>③ 국민재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지원 및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 - 조각투자, 토큰증권 등 혁신 신상품 관련 투자자보호 감독방안 마련</p>
<p>11)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따뜻한 금융" 실현</p>	<p>① 은행권 포용금융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은행권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 마련</p> <p>②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 중소기업회사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마련</p> <p>③ 금융지원 강화 및 접근성 제고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환경 조성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연계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p> <p>④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 -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금융역량 강화</p>
<p>12) 민생금융범죄 척결역량 강화 등을 통한 "잔인한 금융" 척파</p>	<p>① 민생금융범죄 척결 현장 집행력(단속, 예방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 -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 추진</p> <p>② 민생금융범죄 피해 회복을 돕는 실효적인 피해구제 조치 실시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확대·개편 및 불법추심 초동대응 강화</p> <p>③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전방위적 대응 및 소비자 피해 억제 도모 - 수사기관 업무지원 및 정보공유 확대 등을 통한 민생금융범죄 수사력 제고</p>

#### 5. [미래] 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

<p>13)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구축</p>	<p>① IT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체계 확립 - 중대 취약점 미보완 회사에 대한 현장점검·검사</p> <p>② IT리스크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자체 대응역량 강화 - 「금융권 중대 전자금융사고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p> <p>③ 전자금융업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점검 강화 및 감독방안 마련 - 온라인 플랫폼 및 금융결제 결합 보편화에 따른 감독방안 마련</p>
<p>14)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 가상자산 거래환경 조성</p>	<p>① 혁신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금융 AI 생태계 조성 - 「금융AI 윤리지침」을 제정하여 AI 가이드라인 등에 반영</p> <p>② 데이터 활용·결합 확대 등 데이터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 결합품질 제고</p> <p>③ 이용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 감독·조사체계 구축 -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주요 고위험분야에 대한 기획조사</p>
<p>15)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 지원</p>	<p>① 금융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업권별 제도 정비 - AI 등 신기술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거버넌스·검증체계 마련·운영</p> <p>② 국민경제 및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기반 강화 - 전환금융 활성화방안 검토 추진</p>

1. 감독행정의 투명성·공공성 강화 및 금융회사 역량 강화 지원

□ **검사·제재 프로세스, 내부 경영혁신 등을 통한 감독행정의 투명성·공공성 제고**

- 검사, 제재 등 금감원의 감독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쇄신 계기로 삼아 감독행정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해 검사, 제재 등 프로세스 혁신 추진
- **(검사) 중간 검사결과 발표 제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 임직원 권익보호 및 검사결과 처리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검사업무 전반의 프로세스 개선

[ 검사 프로세스 개선(예시) ]

- **(중간 검사결과 발표 제한)**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발표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금융위와 협의하여 마련
- **(수시검사 사전 통지기간 확대)** 금융회사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사전 통지기간 확대
- **(의견청취 제도 개선)** 제재대상자가 검사 부서장에게 의견청취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권익보호기준에 명시하여 방어권 보장 강화
- **(검사결과 처리 진행상황 통지방식 개선)** 담당 검사역이 검사결과 처리 진행단계를 입력할 때마다 진행단계가 금융회사에 자동 통지

- **(제재) 처벌 중심의 제재에서 벗어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제재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제재 프로세스 정비

[ 제재 프로세스 개선(예시) ]

- **(자율시정 기회 부여)** 경미한 위반행위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조치 면제
- **(제재공시 시스템 개선)** 누구나 제재내용·결과를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제재공시 시스템 개선
- **(제재심 민간위원 다양화)** 법조인 중심에서 학계, 연구원 등으로 민간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직역 편중을 해소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자는 위촉을 사전 제한

- 아울러, 금감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 제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공운위의 지정 유보조건에 부합하는 내부 경영혁신 방안 마련·추진\*

\* (예) 기관장 업추비 상세내역 공개, 알리오(ALIO)를 통한 경영공시 강화 등

□ **금융회사 업무의 편의성 및 준법의식 제고 지원**

- 접수-심사 등 인·허가·등록업무 쏠 과정을 디지털화(Paperless)하는 '인허가 통합 시스템' 구축

\* (26) 인허가 접수 건이 많은 9종(전금업, 신기사 등) 우선 개발 → (27) 인허가 쏠유형 확장

- 상장사 중심으로 진행했던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금융회사 등으로 확대(IB 본부장 간담회, 직원 대상 집합교육 및 내방교육 등)

## 2. 금융감독 디지털화,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한 감독 경쟁력 강화

### □ AI 기반 금융감독 효율화 등 디지털 업무혁신 추진<sup>[국정47]</sup>

- 민원·분쟁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하여 금융소비자 관점의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
  - \* 유사사례·판례 등 공정하고 일관된 판단 근거를 자동 추천·제공하여 소비자 권익침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균질화
- 정부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기조에 발맞춰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조사 프로세스 혁신 추진
- 금융감독 AX(AI 기반 셉테크)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의사결정 및 실행조직, 관련 내규 등을 아우르는 AI 거버넌스\*를 금감원 내 구축
  - \* 금감원 내 AX 전략 수립·실행을 총괄하는 최고AI책임자(CAIO, Chief AI Officer) 지정, AI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설치·운영, <sup>가칭</sup>「임직원 AI 활용 윤리기준」 제정 등
- AI 불법정보 감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불법광고 유형을 신속히 모니터링하여 피해발생 예방
  - \* 불법광고 뿐만 아니라 신규 유형(불법추심 등)까지 적발

### □ 대외정보 제공 확대 등 금융감독 수요자의 편익 증진

- 「제5차('26~'28)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재무·영업 관련 금융 공공데이터 추가개방\*\* 실시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법 §7), '26년초 금융위 등 관련 부처의 계획을 종합하여 행안부 발표 예정
  - \*\*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서버(금융위)로 추출·이관
- 검사·제재 정보에 대한 대외 공시범위 및 제공방식을 개선\*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UI/UX를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전면 개편
  - \* (공시범위) 구체적 사실관계 포함, (제공방식) 검색·추출·활용이 원활한 형태(xml)로 변환
  -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및 「디지털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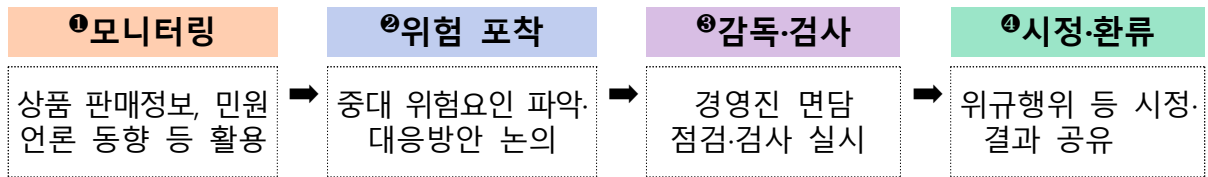
## 전략② [신뢰]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

### 3.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 확립

□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의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전면 전환<sup>[국정66]</sup>

-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 ①모니터링→②위험 포착→③감독·검사→④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 구축\*

\* '26년 조직개편시 신설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서 협의체 운영 등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각 권역 및 대외협력 부서 등이 모니터링, 위험요인 대응방안 제시 등 담당



- 금융상품의 설계·제조(상품의 핵심위험 인식·평가 유도), 심사(핵심위험 등에 대한 심사 강화), 판매-사후관리(소비자피해 우려 상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순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 소비자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



- 특히, 상품설계·제조 단계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에 내재된 핵심위험\*을 정의하고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 (예) 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 및 손실 발생요인 등, 보험상품은 보장하지 않는 보험사고, 대출상품은 금리변동 위험 등

-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간 상호 감시 강화,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상품설계 및 소비자 이해도에 대한 정기적 평가 추진

**[참고] 업권별 주요 소비자보호 강화 추진방안**

- ① **(금투) 해외부동산펀드의 Due Diligence 체계 확립**(실사 점검보고서의 신고서 첨부 의무화), **파생결합증권·사채(ELS(B), DLS(B)) 설계기준 강화**(설계·제조), **고위험펀드 및 요주의 운용사 등에 대한 중점심사 체계**(고위험펀드의 복수 담당자 심사 등) 가동(심사)
  - 고난도 ELS 조기경보제 도입, **고위험 펀드 운용단계의 내부통제 적정성 점검 등**(사후관리)
- ② **(보험) 제3자 리스크 유발금지**(고비용 의료이용 차단 등)를 **설계기준에 명시**, **상품별 핵심 위험요인**(소비자 불이익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핵심 상품설명서 전면 개편**(설계·제조)
  - 도덕적 해이 유발 우려(新의료기술 신규담보, 특약 세분화 등)시 **사전심사 강화**(심사), **상품감독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피해(분쟁 등) 발생시 **상품감리에 신속 착수**(사후관리)
- ③ **(은행) 불공정 약관 방지**를 위해 **설명회 개최 확대**(설계·제조), **거점점포**(ELS 등 고난도상품 판매)의 **운영실태 점검 등 고위험상품 판매 현황을 밀착 모니터링**(사후관리)

**□ 소비자 안내 강화 등을 통한 소비자 중심의 금융거래 환경 마련** [국정66]

-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상품 조건 변경 차단을 위해 **소비자 안내 등을 강화\***하고,
  - \* 대출금리 변경시 SMS를 통한 소비자 안내 강화(저축은행·상호금융), 카드 부가 서비스 혜택 적용을 위한 전월실적·인정조건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 등
- 금융회사 건전성, 소비자보호 역량 및 주요 투자판단 요소에 대한 **정보공개**(동종 고위험펀드 주요 손실내역 공시 등) **확대로 소비자 알권리 강화**
- 계약체결·유지·해지 등의 단계에서 소비자가 자신에게 더 **유리한 상품\*** 또는 **업무처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온라인 카드 발급시 국내전용카드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 \*\*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상환시 중도상환 또는 청약철회권 행사 선택 가능(저축은행 등)

**□ 금융후생의 소비자 환원 등 소비자 혜택 적극 강화** [국정66]

- 대출금리 및 수수료 산정체계 점검·개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제고** 등을 통해 소비자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방지\***
  - \* ① **(금리부담 완화)**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저축은행·캐피탈사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 제고방안 마련 등을 통해 불합리한 금리부담 방지
  - ② **(수수료 합리화)** 예탁금 이용료 산정 합리화 개선 실시, ETF 보수 변동시 상품심사 위원회 사전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내규화하는 등 운용보수 결정 체계의 합리화
- **보험금 신속 지급을 위한 제도개선**,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카드사 다크패턴 개선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 \* ① **(보험)** 지급 지연율이 높은 특정 상품군 등을 대상으로 지연 사유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에 대한 공시 강화
  - ② **(여전상호)** 카드사 모바일 앱(App)을 통한 카드 발급·이용·해지 등 카드 서비스 전반에 걸친 다크패턴 개선, 상호금융권 예적금 중도해지 이율 개선 등

## 4. 민원·분쟁처리 혁신 등을 통한 사후적 소비자권의 보호 강화

### □ 금감원 민원·분쟁처리 프로세스 혁신 지속 [국정66]

-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한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분쟁민원 처리에 대한 대내외 객관성을 확보

\*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쟁조정 건에 대해 금융회사는 무조건 수용하도록 하고, 소비자는 수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예) 특정상품 관련 최초 분쟁조정 신청 등에 대해 완화된 회부기준 적용, 편면적 구속력 적용 대상의 경우 심사강화를 위한 내부협의체 신설 등

※ 금감원은 해외 도입사례 등을 감안, 합리적 적용기준(금액) 설정 등을 포함한 국회·정부 등의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

- '25년 본격 도입한 실손보험 분쟁유형별 전담협의제를 고도화\*하고, 전담협의·집중처리가 가능한 분쟁유형을 추가 발굴

\* 심평원 심사사례, 보험사별 심사기준, 판례 등을 협의양식에 반영하여 쟁점별 수용률 제고

- 금감원 내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동일 유형의 다수 분쟁민원 또는 금융사고 발생시 민원, 감독·검사 등 관련 부서간 처리방안을 협의

※ 동일 유형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예상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금감원과 금융회사간 양방향 정보체계 구축

### □ 금융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 기준 정비

- 현행 분쟁조정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법규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선 추진

\* 금소법 시행 後 가입한 금융상품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금소법 시행 前 마련한 분쟁조정 배상기준에 대한 정교화 등 검토

\*\* 예) 부당권유 관련 형사처벌 미적용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비율 상향조정 여부 등

-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 빈발에 따라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피해 관련 고의·중과실 입증자료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

\* 예) 유효한 결제 비밀번호 외 회원가입시 등록된 단말기를 통해 인증하였는지 등 확인

### □ 금융회사 민원·분쟁처리 역량 강화 및 소비자 권익 증진 도모

- 금융회사와 분쟁민원 특이사항 및 진행상황 등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소통채널\*(Hot-Line)을 구축

\* 분쟁업무 실무자와 금융회사 소비자보호부서 직원간 소통할 수 있는 협업체계 구축

-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휴면금융자산 환급실적 제고 유도·관리 강화\*를 지도

\* 예) 환급률 낮은 금융회사 관리실태 파악 및 지도, 휴면금융자산 현황·환급실적 공개 등

## 5. 소비자 권익을 훼손하는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엄단기조 유지

-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이슈에 대한 주의 환기 및 검사역량 집중** [국정66]
  - 급격한 환경변화, 고위험 상품판매 급증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상시 소비자경보를 신속 발령하여 주의 환기 및 피해확산 조기 차단
  -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 등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하고, 영업점 검사 확대를 통해 판매절차,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
    - \* 설계·선정→판매→사후관리 과정에서 금소법·모범규준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
    - \*\* ①금감원 직접 검사(중요 거점점포), ②협회 위탁검사(중소 영업점) 등을 모두 확대
  - 보험상품 관련 분쟁조정, 감리 등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등 문제점 확인\*시 검사와 연계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및 시정조치 실시
    - \* 신설된 보험상품분쟁국(1,2국)을 중심으로 보험상품 분쟁조정 및 상품감리를 신속히 수행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및 회계정보의 신뢰도 강화** [국정47]
  - 기업금융(IB),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한 상시감시, 조사를 강화하고 혐의 발견시 신속 조사 및 엄중 조치 추진
    - \* ①(IB) 공개매수 등 미공개정보 이용, 상장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연루 등, ②(신규사업 가장) AI·반도체·데이터센터·로봇·자율주행·원자력 등 테마 이용, ③(정치테마주) 지방선거 등 관련
  - 합동대응단 증원 및 금감원 조사역량 강화를 통해 중대사건을 신속 조사하고 위법사항은 무관용 엄중 조치 추진(※ 금감원 특사경 인지도사권 부여 협의 및 시행 준비\*)
    - \* 인권친화적 수사를 위한 교육훈련, 수사 개시의 신속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금융위 등 협의)
  - 불공정거래 증가 등으로 인한 사건 적체가 합동대응단 출범·확대에 따른 인력 유출 등으로 심화될 우려가 있어 적체사건 해소방안 마련·추진
  -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주요 상장기업에 대해 회계심사·감리 주기를 대폭 단축\*하여 자본시장에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신뢰도 제고\*\*
    - \* 코스피 전체 시총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코스피200 회사에 대해 매년 10%(20개)를 회계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주기를 10년으로 단축 운영(※ 현재 전체 상장사 20년 주기)
    - \*\* 금융위와 협의하여 회계·심사 감리주기 단축 등과 관련한 조직·인력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로드맵 마련
-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 및 엄단**
  - 허위 보험안내자료 등을 사용하여 보험상품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GA, 설계사 등에 대해 업무정지 등 엄중 조치 추진
  - 부당표시 광고, 준수사항 미이행 등 혐의가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상시·신속 점검\* 및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지속
    - \* 보고의무, 부당표시 광고, 준수사항 미이행 등을 점검 및 계도(시정 요청)

## 6. 취약 분야 및 내부통제 점검 등을 통한 책임경영 유도

### □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집중 점검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규제 실태점검\*\* 등을 실시
  - \* 적합성·적정성 평가 강화, 손실가능성 등 우선 기재, 부적정 판단 보고서 개선 등
  - \*\* 고난도상품 상품설계 규율 강화 등 '26년 중 추가 도입 내용 반영 예정
- 투자수익 및 환율 등에 따라 보험금 변동성이 큰 변액보험에 대해 가입시 안내사항\* 및 수익률 정보제공\*\* 현황 등을 점검
  - \*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 수수료·보수 수준, 펀드관리 방법 및 절차, 최저보증 등
  - \*\* 문자메세지를 통한 정보제공(매월), 펀드 수익률 변동 알림서비스(수시) 등

### □ 금융회사의 건전한 영업관행 유도를 위한 선제적 점검·제도개선 등

-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주요 참여자인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중점 점검
  - \* LP 증권사의 ETF 차입주식(저율 수수료 적용) 재대여 거래관행, 운용사의 채권 자전거래 등
- 건전한 사모운용업 정착을 위해 고위험\* 사모운용사 현장점검 실시
  - \* 비시장성 자산비중 과다, 운용보수 비중 과소, 수탁고 급증 등
- 보험금 분쟁시 활용되는 의료자문 회신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을 표준화하고, 자문의 서명 날인을 제도화함으로써 신뢰도 제고
  - \* 소속 의료기관 정식명칭(약칭 사용 금지), 진료과, 의사명, 면허번호 등 기재

### □ 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등 건전한 경영문화 정착 유도 [국정66]

-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 독립성 및 CEO 선임절차 등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제도개선\* 추진
  - \* ①이사회 전문성·다양성·독립성 강화, ②CEO 승계절차의 투명성 확보, ③CEO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성과보수 체계 마련방안 등을 논의하고 지배구조 개선대책 마련 계획
- 단기실적 중심의 '영업 우선주의' 문화 근절을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의사결정 체계, 이사회 경영진 감시 역할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
- 불완전판매 등에도 임직원의 성과급을 초기 과다 지급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추진
  - \* 취약 임직원(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성과보수체계 관리 여부 중점 점검 등
  - \*\* 성과보수 공시 실효성 제고, 임원보수에 대한 주주통제 강화, 이연기간·비율 강화, 재평가 및 환수 근거 명확화 등
- 금융권의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강화 유도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체계 전면 개편 및 평가방식 고도화\* 추진
  - \* 평가주기 단축 및 평가대상 확대, 금융업권별 차등화된 평가방식 도입 등

7.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선제적 대응

□ 금융시장 상황 급변 및 부실발생에 대비한 모니터링·조치 강화

-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특별 관리체계\*에 따라 밀착 관리하여 위기 확산 차단\*
  - \* ①연체율·부실채권 정리목표 징구·이행점검, ②상주검사역 파견, ③취약조합 집중관리 (면담 등) 및 특별검사 실시, ④확약서 징구 등
  - ※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감독·검사 지원(관계부처 협의)
- IMA 출시, 국내 주식투자 활성화 등 조달환경 변화에 따른 머니무브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금융권 자금조달 운영 현황 모니터링 강화\*
  - \* 예) 은행권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정기 점검 및 미흡사항 개선 등
- 영업실적·건전성 등 회복이 지연되는 취약 중소형 증권사 대상 영업현황, 잠재 위험요인 등을 집중 모니터링

□ 금융시장 리스크요인 점검 및 선제적 대응

-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및 수급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실시하는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 등을 지원
  - \*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페널티 유예(~'26.상) 등
- 외환시장 수급 안정을 위한 증권사의 新금융상품(RIA, 개인투자자용 선물환)의 조속한 출시를 지원
- 환율 불안, 美 경기침체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산을 시나리오로 ST를 실시하여 금융시스템 위기 대응능력을 평가하고 대응방안 마련

□ 부동산금융 건전성 제고 노력 지속

- 부실채권 매각 적극 유도 등을 통해 부동산 PF 부실 감축을 지속 추진하고, PF 건전성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부실 재발방지 추진
  - 부실채권 매각이 미흡할 경우, 경영진 면담 및 부실감축계획 이행점검 등을 통해 지속 관리

■ (부실PF 감축목표) 부실 PF규모\*(18.2조원\*\*)를 '26년말까지 10조원 이내로 관리 추진

\* 부실PF(조원) : ('24.9말) 22.9 → (12말) 19.2 → ('25.3말) 21.9 → (6말) 20.8 → (9말) 18.2

\*\* 새마을(6.8조원) > 증권(3.6조원) > 상호(3.4조원) > 여전(1.8조원) > 저축(1.7조원) 順

- 부동산PF 사업장에 자금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규제 정비\* 등 리스크에 상응하는 건전성 규제 체계를 확립

\* 거액신용한도규제 도입을 위한 업권법 개정, 위험가중치 차등화를 위한 시행세칙 개정, 충당금 차등화를 위한 PF사업성 평가기준(모범규준) 개정 등

## 8. 가계기업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 관리

### □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노력 지속 [국정58]

- ①가계부채 총량목표 준수 유도, ②상환능력 기반의 여신심사 관행 정착, ③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활성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

- 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 업권별·회사별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수립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
  - 쓸림·중단없는 여신공급을 위해 월별·분기별 관리기준을 마련하되,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
- ② DSR 예외대출 취급시에도 최대한 정확한 차주 소득을 확인하여 내부 관리목적 DSR을 산출하고 자율 관리토록 유도
- ③ 차주의 금리리스크 완화 등을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주담대 확대 지속 추진, 과도한 채무부담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유한책임대출\* 활성화 추진 등
  - \* 차주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 가치 내로 제한(현재 정책모기지에만 도입)

### □ 기업부채 잠재리스크에 대한 안정적 관리 및 선제적 대응

- 구조개편이 필요한 산업(석유화학 등)에 대해 원활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 「산업 구조혁신 금융권 공동협약」에 따른 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
- 기업구조조정 제도(주채무계열 및 신용위험평가)를 엄정\*하게 운영하여 한계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
  - \* (주채무계열 평가) 정성평가지 관대화 경향 여부 지속 점검, (신용위험평가) 채권은행 현장점검 실시를 통한 평가 적정성 검토 등
- 기업·산업의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인식·대응하기 위해 시장(신평사·증권사 등) 및 산업(협회·기업) 전문가와의 소통을 강화\*
  - \* 시장전문가(신평사·증권사 등) 및 주력 산업별 전문가와의 간담회 개최 등

### □ 기업 구조조정 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구조조정 실효성 제고

- 주채무계열 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채권은행 등과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 예) 산업 특수성 고려방안,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평가 방안 등
- 기업 부실을 조기에 포착하여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위험평가 운영체계를 개선\*
  - 예) 평가등급 세분화 등을 통한 고위험기업 밀착 관리 등

## 9. 생산적 금융과 리스크관리의 균형 下 감독제도의 합리적 개선

### □ 글로벌 정합성 준수 下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규제 개선<sup>[국정58]</sup>

- **(은행)** 글로벌 기준(Basel III)을 준수하면서 은행·지주의 건의사항 및 금감원 발굴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바탕으로 자본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 단기차익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외환포지션은 시장리스크 산출시 제외,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된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의 배제 기준 마련 등
- **(보험)**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을 통한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 경감\* 등을 추진
  - \* 예) 투자처에 대한 정부보증이 20%인 경우, 요구자본(주식위험액)을 20% 경감
- **(금투)** 부동산 실질위험의 순자본비율(NCR, 자본적정성 지표) 반영\* 및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 도입 등
  - \* (현행) PF대출과 채무보증의 경우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나 NCR 위험값이 상이 (개선) 형태와 무관하게 사업단계·담보 등 리스크요인으로 위험값 차등화

### □ 금융산업별 핵심 리스크요인에 초점을 둔 감독제도 정비 및 선진화

- **(은행)**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일중 유동성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 여부 지속 검토
- **(보험)** 계리가정 적정성 검증을 위해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하고, 회사간 비교가능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핵심 계리가정(손해율·사업비 가정 등)에 대한 건전성 감독 차원의 표준기준을 마련·시행
- **(금투)** 기업신용공여 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시 업종·기술별 구체적 관리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범규준 마련
  - \* 실사(Due Diligence)의무, 재무약정 등으로 관리 필요사항 마련, 내·외부 전문기관 기술 검토, 간접운용시 운용사 검토 필요사항, 용도의 사용 점검방식 등
- **(중소)**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규제부담을 높이고,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 마련\*
  - \* PF대출 한도규제 강화, 부동산·건설업 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민간중금리 대출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 **(전자금융)** 「전금법」 개정(25.12월)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사에 대해 조치 요구권 행사 등을 통해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 체계를 확립

**10.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자금공급 원활화 및 투자자보호**

**□ 모험자본 공급 확대 및 생산적 금융 기반 강화 [국정46]**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확대(‘25년중 5개사 인가)에 따른 모험자본 공급현황\* 점검 및 개선과제 발굴\*\* 등 관리·감독체계 마련
  - \* 종투사 지정·인가 신청 8개사의 사업계획서 기준, 3년간 약 26.7조원 공급
  - \*\* 정책적 육성 산업의 공급자금 등에 대해 모험자본 의무비율 산정시 인센티브 부여 등
- 투자처 발굴이 필요한 증권사와 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의 상호 수요를 반영한 모험자본 공급 플랫폼 구축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인가·펀드 심사기준 등 마련

**□ 매력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국정47]**

-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등 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 투자제도를 지속 보완하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반 마련
- ETF 관련 다양한 투자수요 충족을 위한 상품 다변화를 추진하고, 공시 등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일반투자자의 합리적 투자결정을 지원
- 일반투자자의 권익 보호 및 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업공개(IPO) 관행 개선방안을 발굴·추진
-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사업보고서\* 및 취득·처분 관련 주요사항 보고서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시 엄중 제재
  - \* 상장사 자기주식 공시의무 강화 : 5% 이상, 연 1회 공시 → 1% 이상, 연 2회 공시(‘26년~)

**□ 국민재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지원 및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 [국정48]**

-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따른 안정적 시장 운영,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 및 감독방안 등 검토·논의
-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 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방안 마련\*
  - \* STO의 경우 업계 준비현황 등 점검 후, 발행·유통·투자자보호 등 감독체계를 마련할 예정
- 장수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연금 수령 장기화 방안 및 관련 상품개발 등에 대해 논의 및 검토

## 11.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따뜻한 금융” 실현

### □ 은행권 포용금융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국정59]

- 은행권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 마련 등을 통해 포용금융의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
  - \* 매년 은행별 포용금융(서민·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회공헌 등) 이행체계·현황 등을 종합평가 → 평가결과 등을 경영진·이사회 등에 안내하여 경영문화로 정착을 유도
- 상생협력법상 은행-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 도입하는 상생금융지수 관련 평가체계 및 인센티브 방안 마련

###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국정59]

- 중·저신용자의 2금융권 대출금리가 급격히 높아지는 금리단층 현상 완화 등을 위해 중소기업회사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
  - \*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원활한 안착을 지원
  - \* 비대면 대출취급이 용이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부터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 확대

### □ 금융지원 강화 및 접근성 제고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환경 조성 [국정59]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생을 촉진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
  - \* 정산주기 단축, 매출채권 보험 등을 통한 차주 앞 상환청구권의 단계적 폐지 등
- 은행권 서민금융 대표상품인 새희망홀씨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상품 다변화와 비대면(인터넷·모바일) 채널 활성화를 지원
-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위해 금융(서민금융, 채무조정 등)·고용(국민취업지원제도 등)·복지(생계급여 등) 복합지원 안내 등 강화\*
  - \* 취약계층 유형별로 적합한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을 민원 회신문에 반영 등

### □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 [국정82]

-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금융지식 제공 등 금융역량 강화 추진\*\*
  - \* (예) (학생) 「FSS어린이 금융스쿨」 운영 및 참여형 수업 활성화를 위한 체험형 교구재 개발 (고령층) 「FSS 시니어아카데미」 및 '고령층 집중 교육기간' 운영
  - \*\* (예) 「e-금융교육센터」에 생애주기별(청년층·중장년층·고령층) 온라인 금융교육 강좌 개설
- 금융취약·소외계층(자립준비청년 등)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화 콘텐츠 제공 및 재무상담·특강 확대

## 12. 민생금융범죄 척결역량 강화 등을 통한 “잔인한 금융” 혁파

### □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현장 집행력(단속, 예방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 [국정66]

-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 추진\*
  - \* 법무부·금융위 등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필요
- 통신 및 금융회사가 각각 보유한 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조기 차단\*
  - \* (예시) 통신사가 AI기술을 통해 확인한 보이스피싱 탐지 정보를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에 접목하여 고객이 사기 피해금을 송금하기 전에 사전 차단
- 병·의원 주도 보험사기 및 SNS상 허위환자 유인 등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한 조사 강화\*
  - \*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병의원 관계자 등 대상으로 특별 신고기간 운영 등
-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및 운영이 타업권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한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협업검사 실시

### □ 민생금융범죄 피해 회복을 돕는 실효적인 피해구제 조치 실시 [국정66]

-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확대·개편\*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추심 관련 초동대응 강화\*\*
  - \* ①온라인 상담 채널 개설, ②신고센터 인력 증원, ③상담직원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추심 중단을 경고하고 채무 종결 통보
  - \*\* 불법 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법적 대응 예정임을 사전 경고
-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해당시 무효임을 통보하고\*,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하여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
  - \* 금융거래내역서 등 확인후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불법사금융업자 상대로 발급

### □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전방위적 대응 및 소비자 피해 억제 도모

-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25.8월)을 적극 추진하고, 범죄자금 이동 차단을 위한 다층적(계좌관리-이체-출금) 관리체계\*\* 마련
  - \* 배상책임제도 도입, 가상자산 지급정지·환급, 인적·물적설비 확충, AI플랫폼 정보공유
  - \*\*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거래목적 확인 등 계좌관리 강화, 피해금 이체거래 상시감시 등
- 수사기관 업무 지원 및 정보공유 확대 등을 통해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수사력 제고\*
  - \* 금감원이 초동조사 후 경찰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즉시 수사 전환 공조체계 구축
- 렌탈채권 관리 강화(법무부 등과 공조), 개인금융채무자 대상 무분별한 시효연장 행위 억제 등 시효완성 채무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추진
  - \* 대부업권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마련 → 소액취약차주에 대한 시효연장 통제 등

## 13.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구축

□ IT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체계 확립<sup>[국정66]</sup>

- 금융권 보안취약점 사전 식별 및 분석·평가를 강화\*하고, 중대 취약점 미보완 회사는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여 취약점 사전대응을 강화
  - \* 전자금융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보고서 분석주기를 단축하고, 특정 IT자산을 관리 대상에서 누락하여 공격 탐지를 실패하지 않도록 관리 IT자산 식별·관리 의무화 방안 마련
  - \*\* 취약점 관리 부실회사를 조기포착할 수 있도록 상시감시 선별지표를 개발하여 점검에 활용
- FIRST\*를 본격 가동(26.2월 예정)하여 금융권 사이버 위협 정보를 상시 수집·전파 및 신속 대응하고, 금융보안원과 정보보안 공조 강화
  - \* 통합관제시스템(FIRST : Financial-IT Incident Response Surveillance control-Tower)
- IT리스크 계량평가를 개선\*하는 등 위험요인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IT 취약부문을 집중 분석하여 고위험사는 불시 현장검사 실시
  - \* 기술지원 종료 서버 비율, 전산센터 UPS(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배터리 노후화 비율 등 보안사고 개연성이 높은 지표를 보강

## □ IT리스크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자체 대응역량 강화

- IT사고에 따른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권 중대 전자 금융사고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 \* 사고발생시 소비자 피해확산 방지절차, 신속복구 체계, 재발방지대책 수립절차 등
- 제3자 IT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 주요사항을 IT실태평가에 반영

## □ 전자금융업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점검 강화 및 감독방안 마련

- 이용자 자금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선불충전금 예치(별도관리) 전용상품\* 도입 및 PG사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 점검 등을 실시
  - \* 「전금법」상 예치를 통한 별도관리 기준·절차에 부합하는 은행권 공통의 전용 예금상품
-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점검, 알고리즘 심사항목 및 검증 방법 개선\* 등 추진
  - \* 금융보안원과 협업을 통해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추천시 이해충돌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고리즘 설계의 적정성 점검 및 정교화 추진
- 온라인 플랫폼 및 금융결제의 결합 등이 보편화된 전자금융거래 환경에 맞춰 IT·정보보안 등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감독방안 마련

## 14.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 가상자산 거래환경 조성

### □ 혁신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금융 AI 생태계 조성

- AI 도입·활용 등 쏠 주기의 위험을 금융회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를 제시
  - \* AI 관련 ①거버넌스, ②위험평가, ③위험통제 핵심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반영
- 금융회사 AI 활용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제고 및 신뢰기반 조성을 위해 「금융AI 윤리지침」을 제정하여 AI 가이드라인 등에 반영

### □ 데이터 활용·결합 확대 등 데이터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 결합품질 제고 및 결합데이터 재사용 방안(강화된 보안환경 下)을 마련하고,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소비자보호 체계 등 강화
- 데이터전문기관의 가명·익명처리 관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SCB) 및 데이터베이스(SDB) 구축 지원
  - \* 금감원 및 금융위, 신정원, 금융협회, 소상공인 단체 등이 참여하여 소상공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금융·비금융 정보를 집중하고 평가하는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 □ 이용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 감독·조사체계 구축 [국정48]

-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최근 조직개편시 신설)」을 운영하여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효과적 이행을 준비\*
  - \*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지원 관련 공시서식·절차·방법 등 공시체계 마련, 디지털자산업자·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등 인가심사 업무를 위한 매뉴얼 및 관련 서식 마련 등
- 건전경쟁 촉진 및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 구분 관리 및 공시 세분화 추진
- 대형고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가상자산시장 주요 고위험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 \* 가두리·경주마 등 가상자산시장 특성을 이용한 시세조종, 시장가 API 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 및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부정거래 등
- 이상급등 가상자산을 초·분 단위로 분석하여 혐의구간·그룹 등을 자동적출하는 기능 및 AI 활용 텍스트 분석기능 개발

## 15.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 확보 지원

### □ 금융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업권별 제도 정비

- **(은행)** AI 등 신기술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거버넌스, 검증체계 마련·운영 등 안정적 금융환경 조성
- **(중소)**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지급결제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카드사업무범위 확대 등 디지털자산 관련 신사업 수행 지원
- **(보험)** 최근 보험환경 변화(고령화 진전, 디지털화 등)에 발맞춘 신사업 영위 및 서비스 제공을 적극 지원
- **(금투)** 자산승계 목적 신탁상품(유언대용·증여신탁 등)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지원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신탁사 역량 제고\*\* 추진

\* '24.11.11. 자본시장법 개정안(채무·담보권 신탁 신설, 전문가 위탁 허용 등) 발의

\*\* 맞춤형 신탁 설계, 세금, 법률분쟁 등 대응을 위한 교육 강화,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 등

### □ 국민경제 및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기반 강화 [국정46,66]

-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발표(금융위·기후에너지환경부 공동) 및 금융권 실무 정착을 위한 금융권 실무 TF 운영 및 활성화 방안\* 검토·추진
- 전환금융 대시보드(dash-board) 도입, 금융사별 전환 기여도 집계, 산업별 전환금융 수요 추정, 전환금융 인센티브 제공방안 협의(유관부처) 등 추진
- 유관기관(한국은행 등)과 협력하여 금융권 공동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관리 지원방안 등 검토
-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건전성·지배구조·영업행위 규제를 규모별로 차등 재정립
- 상호금융 중앙회의 리스크관리 역량, 손실흡수 능력, 조합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중앙회 중심의 위험관리체계 정립
- 전 국민이 가입하는 실손·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상품구조 개편, 보상기준 개선\* 등을 지속 추진

\* (실손) 과잉의료 방지를 위한 5세대 상품 출시 지원, 소비자보호 TF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자동차) 보상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소비자 오인 방지 등을 위한 표준약관 정비 등